##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54 발의연월일: 2025. 4. 18.

발 의 자 : 홍기원 · 김동아 · 서미화

노종면 • 허 영 • 김영배

윤종군・박지원・박 정

김성회 · 송옥주 · 장종태

서삼석 · 김기표 · 주철현

어기구 • 이연희 • 김교흥

전현희 · 복기왕 · 정태호

소병훈 · 김병기 · 김태년

서영석 · 오세희 · 김 유

이용선 · 이용우 · 최민희

권칠승 • 박희승 • 박선원

서왕진 · 이정문 · 부승찬

이기헌 · 김준형 · 김주영

박해철 · 허성무 · 김종민

백선희 • 정일영 • 이병진

이언주 · 임미애 · 김성환

박용갑 • 신영대 • 안호영

김현정 의원(5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 86개의 사업 중 15개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도 아직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 특별법의 존치가 꼭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법률 제 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주한미군 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조부터 제 8조의2까지,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후 사업에 착수하였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18조부터 제2

0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4조부터 제24조의3까지,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
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	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
에 관한 특별법 부칙	에 관한 특별법 부칙
② (유효기간) 이 법은 <u>2026년</u> 12	② (유효기간) <u>2030년</u>
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